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2020. 03. 16. 제정

2020. 09. 23. 개정

2020. 11. 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정 제19조에 따라 협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협회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0.9.23. 개정>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사무국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위촉되며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정한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장 및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협회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성된다.

1. 협회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2. 시협회(인정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동일하다.)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천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3. 지도자
 4. 심판 <2020.9.23. 개정>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였던 사람
 6. 탁구 동호인
- ②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020.11.17. 개정>
 2. 선거인이 선수, 지도자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동호인인 경우 협

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단체의 임원인 경우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아야 함

제 5 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시협회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정한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회장 임기만료일 전 20일까지 각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의 일정한 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020.9.23.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 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단체에 동일한 배율이 적용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 6 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협회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2. 시협회 : 시협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2020.9.23. 개정>
 - 가. 협회 임원 1명
 -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 다.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1명
 - 라. 탁구동호인 1명
3. 지도자 : 4명(전문체육 2명, 생활체육 2명)
4. 심판 : 2명 <2020.9.23. 개정>
5.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 2명
6. 탁구 동호인 : 2명

제 7 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

준으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협회 및 도협회의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한다.

② 선거인 후보자 추천명단에는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8 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협회로 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과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를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 9 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5일부터 3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5호에 따라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0.9.23. 개정>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시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운영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협회규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11.17. 개정>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020.11.17.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2020.11.17. 개정>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회원종목 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2020.11.17. 개정>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
(대회 및 회의 등 포함)
-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2020.11.17. 개정>
-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2020.11.17. 개정>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 ⑨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

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020.9.23. 개정>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2020.9.23. 개정>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5.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단체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와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까지 이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0.9.23. 개정>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020.9.23. 개정>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020.9.23. 개정>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20.9.23. 개정>

제 4 장 선거 및 선거운동

- 제14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2020.9.23. 개정>

제15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

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6조(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이하 “선거사무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사무원등은 체육회 및 체육단체(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선거사무원등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선거사무원 등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등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16조제2항의 별도지침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20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협회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

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후보자에 한한다)

나. 선거사무원등의 자격박탈 및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다.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마.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도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종목단체, 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아.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3.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영구제명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 취소가 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3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단아야 한다. <2020.9.23. 개정>

제23조의 1(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 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본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3조의 2(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에 귀속한다. 단, 등록무효 또는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당 선 결 정

제25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020.9.23. 개정>

제26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 날에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 사무실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재선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제28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9조(그 외의 사항) 선거는 협회규정 및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도체육회 회장선거관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020.11.17.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①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3. 이력서 1부.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